



#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

## - 건물 -

고유번호 1717-1996-452206



[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205-13

【 표 제 부 】 ( 건물의 표시 )				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 (전 2)	1987년9월29일	<del>경상북도 포항시 두호동 205-13</del>	<del>시멘트 벽돌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56.26㎡</del>	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22일 전산이기
2		<del>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205-13</del>	<del>시멘트 벽돌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56.26㎡</del>	<del>1995년1월1일 행정구역변경 및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1999년12월28일 등기</del>
3		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205-13 [도로명주소]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321번길 22-18	시멘트 벽돌조 스테트지붕 단층주택 56.26㎡	도로명주소 2012년9월18일 등기

【 갑 구 】 ( 소유권에 관한 사항 )				
순위번호	등 기 목 적	접 수	등 기 원 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3)	소유권이전	1987년9월29일 제47779호	1987년9월28일 매매	소유자 장정자 <del>540309-*****</del> 포항시 두호동 205-13
				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22일 전산이기
1-1	1번등기명의인표시 경정	2024년11월21일 제71695호	1987년9월29일 신청착오	장정자의 등록번호 540309-*****
				대위자 이의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사방공원길

[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205-13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				109 (소동리) 대위원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소109953 임대차보증금사건의 확정판결로 인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타경36986 부동산강제경매신청
2	압류	<del>2009년5월27일 제38544호</del>	<del>2009년5월26일 압류(고객지원 부-2131호)</del>	<del>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11471-0008863 서울시 마포구 독막길 24(염리동 168-9) (포항남부지사)</del>
3	2번압류등기말소	2011년10월31일 제103129호	2011년10월31일 해제	
4	압류	<del>2014년3월18일 제24176호</del>	<del>2014년3월18일 압류(자격징수 부-902777)</del>	<del>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11471-000886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(염리동 168-9) (포항남부지사)</del>
5	4번압류등기말소	2015년1월12일 제2645호	2015년1월12일 해제	
6	압류	<del>2020년6월19일 제44877호</del>	<del>2020년6월19일 압류(자격징수 부-905849)</del>	<del>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11471-0008863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(반곡동, 국민건강보험공단) (포항남부지사)</del>
7	6번압류등기말소	2021년7월22일 제55135호	2021년7월22일 해제	
8	강제경매개시결정	2024년11월22일 제72096호	2024년11월2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 정(2024타경369 86)	채권자 이의분 590519-***** 포항시 북구 삼호로321번길 22-18 (두호동)

【 을 구 】 (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)				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1 (전 11)	<del>근저당권설정</del>	<del>1992년6월23일 제33043호</del>	<del>1992년6월23일 설정계약</del>	<del>채권최고액 금삼천만원정 채무자 장정자 포항시 두호동 205-13 근저당권자 두호동새마을금고 174644-0003465 포항시 두호동 389 공동담보 등기제205-13호 토자</del>
2 (전 12)	<del>근저당권설정</del>	<del>1995년9월28일 제69042호</del>	<del>1995년9월27일 설정계약</del>	<del>채권최고액 금일천육백이십만원 채무자 장정자 포항시 북구 두호동 205-13 근저당권자 두호동새마을금고 174636-***** 포항시 북구 두호동 385 공동담보 토지, 건물 205-13호</del> 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번 내지 2번 등기를 1999년 12월 22일 전산이기
3	1번근저당권설정, 2번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	2005년3월7일 제19142호	2005년3월7일 해지	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

\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\* 기록사항 없는 gaps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\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\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# 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## [ 주의 사항 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717-1996-452206

[건물]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두호동 205-13

### 1. 소유지분현황 ( 갑구 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장정자 (소유자)	540309-*****	단독소유	포항시 두호동 205-13	1

### 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 갑구 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정보	주요등기사항	대상소유자
8	강제경매개시결정	2024년11월22일 제72096호	채권자 이의분	장정자

### 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 을구 )

- 기록사항 없음

## [ 참 고 사 항 ]

-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